제82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안(방송통신위원회)	1.이사·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(신설)이사·임원의 보수 등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의 규정	1.비중요
2	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(신설) 임원의 보수 등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의 규정	1.비중요
3	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이사·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(신설) 이사·집행기관의 보수 등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의 규정	1.비중요
4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·단체(민간단체 포함), 민간업체가 마련하는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및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·변경시 통보 의무 등(신설)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(안 제29조의3 제3항),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통보 의무(안 제29조의3 제4항),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행실태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요청(안 제29조의3 제7항)	1.비중요
5	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환경부)	1.배출자 인증방법을 카드인식에서 비콘태그 인식방법으로 변경(신설) ○ 배출자 인증방법을 배출자 인증카드 인식에서 비콘태그* 인식방법으로 변경 * 배출자 보관창고에 설치하며 일정거리 내에서 배출자 정보가 리더기에 자동으로 인식되는 장비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소각업체 폐기물 입고방식을 차량별에서 태그별 입고로 변경(신설) o 소각업체 폐기물 입고방식을 차량별에서 태그별 입고로 변경 - 폐기물을 차량에서 하역한 후 리더기로 개별인식 하여 입고처리	
6	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(강화) 러시아 및 벨라루스 대상 非전략물자 57개 통제품목 신규 추가하여 양국에 대한 상황허가 의무통제 추진	1.비중요
7	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강화(강화)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 강화	1.중요
8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법무부)	1.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,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(강화) 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과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음	1.비중요
9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고전원전기장치 무상수리 의무 강화(강화) 고전원전기장치 무상수리 요건 (3년이내, 6만km이내)	1.비중요
10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시 제출서류 추가 등(강화) o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악취 저감에 관한 방안을 추가로 제출하도록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규정 *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	
11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추가(강화) o 변경허가 대상 중 '악취 저감 방안의 변경'을 추가 규정	1.비중요
12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신설(신설) o (현행)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(작업치료)에,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,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작업치료를 시행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범위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* 현행 법령상 정신건강전문요원(정신건강사회복지사,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) o (개정)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,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, 재활 및 사회적응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 강화	1.비중요
13	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	1.무선식 경종 및 건전지 전원 경종의 기능 관련 기술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(소방청)	준 마련 (신설) 1.(구조) 무선식 경조의 구조를 규정 2.(무선식 경종의 기능) 무선식 경종의 기능을 규정 3.(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)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종에 대한 전압변동시 기능을 규정	
14	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방송통신위원회)	1.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·변경신고 범위 및휴업·폐업 신고 사항(강화) o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등록 범위 규정(안 제5조) - 위치정보법 개정('21.10.19)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수정필요사항 반영 o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등록 범위 규정(안 제5조) -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 등록 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치정보시스템 중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 o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 신고 범위 규정(안 제5조의2) -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허가·변경신고시 기술적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만 하도록 한 제한을 삭제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, 위치정보사업등의 변경등록·변경신고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개정 o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휴업·폐업 승인 신청서류 규정(안 제7조) -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·폐업 신청서류에 '개인위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'를 제출하도록 규정 o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변경 신고 범위 규정(안 제9조) - 위치기반서비스사업등의 변경신고시 기술적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만 하도록 한 제한을 삭제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, 위치기반서비스사업등의 변경등록·변경신고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위치정보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으로 개정 o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휴업·폐업 승인 신청서류 규정(안 제12조) 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·폐업 신청서류에 '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'를 제출하도록 규정 2.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(강화) o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(안 제20조제2항) - 기술적 보호조치 중 안제20조제2항제2호의 암호화·방화벽 설치 조치를 각 호(제2호, 제5호)로 분리하고, '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'을 포함하도록 규정 3.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(신설)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규정(안 제25조의2) 신설 4.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·절차(신설) ㅇ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·절차 및 파기실태에 대한 실태점검 절차 규정(안 제26조의3) -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도록 하고,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-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대한 실태점검 및 파기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5.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등 사항에 관한 실태점검(신설) ㅇ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대한 실태점검 대상 및 점검방법 구체화 규정(제34조의2) 신설 6.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공개 방법(신설) ㅇ 위치정보법 제36조의2(시정조치 등)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시정명령의 공개방법·절차 마련	